

1993. 1. 14

清州市牛岩商街아파트

火災事故 狀況報告

忠 清 北 道

目 次

事故 概要

應急措置 狀況

事故收拾對策 推進

罹災民돕기運動 展開

事故再發防止 對策

事故概要

1. 建物現況

- 위치 : 청주시 우암동 375
- 대지 : 1,001평
- 건축연면적 : 2,749평 (지하 1층, 지상 5층)
- 거주인원 : 63세대 280명
 - 소유별 : 자가 37세대, 세입자 26세대
 - 직업별 : 회사원 27, 상업 14, 학생 68, 기타 171
- 용도 및 구조 : 점포 및 아파트, 철근콘크리트조
- 건축주 : 최계일, 이상연
- 시공회사 : 신흥건설 (최무근)
- 설계 및 감리자 : 대성건축사사무소 (이학로 72세)
- 층별규모 및 용도 (준공검사시)

층 별	면적(평)	용도	세 대 수
계	2,749	점포 아파트	179 59
지하 1층	607	점포	85
지상 1층	600	"	75
" 2층	530	점포 아파트	19 9
" 3층	456	아파트	24
" 4층	456	"	24
" 5층	100	"	2

< 建築 經緯 >

- 건축허가('80.8.22) : 2,119평
- 설계변경허가
 - 1차('80.12.31) : 2,264평(증 145평)
 - 2차('81. 4.10) : 2,749평 (증 485평)
 - 3차('81. 8.28) : 면적 증가없이 허가
- 준공처리 : '81. 12. 12

2. 事故發生 및 鎮火

- 발생일시
 - 1.7. 01:08 : 지하상가에서 화재 발생
 - 1.7. 02:10 : 아파트 붕괴
- 발생원인 : 조사중
 - 전기누전에 의한 발화로 연소과정에서 건물붕괴 추정
- 진화활동
 - 01 : 13 화재발생신고 접수 및 출동 (신고자 정종선)
 - 01 : 16 현장도착 (현장까지 2km)
 - 01:16 ~ 02:10 진화활동
 - 소방관 190명, 의용소방대 250명
 - 장 비 23대 (소방차11, 구급차9, 중기3)
 - 02 : 10 초기진화와 동시 건물붕괴

○ 인명구조 활동

- 복식사다리 활용 주민대피(2,3층) : 60명
- 사다리차 탑승 옥상대피주민 구조 : 50명
- 공기호흡기 착용 옥내진입 인명구조(7명) 및 대피유도

3. 被害 狀況

○ 인명피해 : 76명

- 사 망 : 28명
- 부 상 : 48명 (중상13명, 경상 35명)

○ 재산피해 : 조사중 (당초소방보고 9억원)

○ 이 재 민 : 63세대 252명 (입원환자 포함)

- 자 가 : 37세대 154명
- 세입자 : 26세대 98명

※ 피해상인 : 68명 (상가 52, 사무실 16)

- 점포 규모별 : 10평이하 22, 10~15평 24, 15평이상 22
- 소 유 별 : 자가 13, 전세 9, 월세 46

應急措置 狀況

1. 搜索 및 解體作業

○ 作業일정

일 자	복 구 내 용	복구공정(%)
1. 7	주변정리, 5층부분 철거	25
1. 8	3 ~ 4층 철거	70
1. 9	2층 철거	80
1.10	1층 철거, 지하실 양수	85
1.11	감식부분외 지하층 철거	90
1.12	현장감식으로 작업중단	90
1.13	현장보존중	

○ 장비 및 인력투입 : 변동없음

- 인력 : 연인원 5,239명

· 공 무 원 1,015, 군 인 1,959, 경찰750

· 의용소방대 539, 소방관 590, 기타386

- 장비 : 연 268대

· 트럭 134, 굴삭기 34, 절단기 25

· 양수기 22, 브레카외 4종 53

※ [군장비(5개부대) : 6종 35대

민 장 비 : 6종 36대(55백만원상당 무료지원)

2. 死亡者 措置

○ 현장수색, 발굴과 동시 4개 병원에 긴급안치 (28명)

- 청주병원 : 3명, 리라병원 : 3명

- 충대부속병원 : 4명, 청주의료원 : 18명

○ 사망자 장례 : 28구

일 자	계	화 장	매 장
계	28	21	7
1. 9	19	17	2
1.10	6	2	4
1.11	1		1
1.12	2	2	

○ 지원사항

- 사망자 장례비 및 위로금 : 1인당 400만원

- 특별위로금 : 1인당 600천원 (도지사 300, 청주시장 300)

- 가구주사망 유족생계 보조금(5세대) : 세대당 300만원

- 장의차량 지원(26대), 장례용품 지원(13백만원 상당)

3. 負傷者 治療

○ 청주의료원 등 8개병원에 긴급후송 조치

총 48명

- 성별 : 남 26명, 여 22명
- 연령별 : · 20세이하 ; 8명, 21 ~ 40세 ; 16명
· 41 ~ 60세 ; 20명, 61세이상 ; 4명
- 부상정도 : 중상 13명, 경상 35명
- 12명 퇴원으로 현재 36명 가료중
 - 1주이상 ; 1명, 2주이상 ; 17명, 3주 ~ 4주 ; 5명
 - 5주 ~ 6주 ; 4명, 8주이상 ; 9명

〈 환자 현상태 〉

- 요 관 찰 : 5명 · 합병증 예상 : 1명
- 수술추가예상 : 3명 · 호 전 중 : 27명

○ 지원사항

- 의료보호 대상자 1종으로 지정 진료비 전액지원
- 특별위로금(도지사) : 1인당 200천원 (39명)
- 진료가족에 대한 급식비 지원
- 부상자 편의제공
 - 공무원 고정배치 간호 및 안내 : 24명
 - 청주시 여성단체회원 간호봉사 : 1일평균 50명

· 罹災民收容 및 救護

○ 임시 수용시설 : 청주농고 기숙사 (30실 180평규모)

○ 이재민 수용 : 63세대 218명

- 연령별

· 10세이하 : 22명, 11 ~ 30세 : 114명

· 31 ~ 50세 : 58명, 50세이상 : 24명

- 직업별

· 회사원 : 27명, 상업 : 12명, 공무원 : 6명

· 학생 : 63명, 노동 : 13명, 기타 : 97명

- 소유별 : 자가 37세대, 세입자 26세대

○ 긴급구호

- 응급 생계구호(최초 7일간) : 백미 432g, 부식비 800원

- 재해구호품 지급(적십자사) : 담요 등 12종

- 특별위로금(도지사, 청주시장) : 세대당 60만원

- 특별생계비 (131세대) : 세대당 100만원

- 생필품 구입지원 : 양동이의외 14종 5,772점

○ 장기구호

- 장기 생계구호(53일간 주부식비) : 1인당 73천원
- 월동대책비 지원 : 세대당 300천원
- 세입자 보조비 (26세대) : 세대당 2,000천원

○ 생계안정대책 추진

-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치 : 취득세, 등록세
- 중고생 학비 감면조치 : 44명 25백만원
- 점포임대자금 지원 및 취업알선
-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(충북은행)
- 피해상인 생업자금 (68명) : 상가당 2,000천원

○ 이재민 편의제공

- 무료 이동전화 설치 : 2대
- 공무원 고정배치 불편사항 즉시해결 : 12명
- 의료진 상주배치 : 의사 1명, 간호사 1명
- 부녀봉사단체 집단급식 봉사 : 12개단체

○ 임시주거 대책

- 주택 및 점포 전세입주 지원

事故收拾對策推進

1. 공무원 현장근무조 편성운영

- 도·청주시 공무원 비상소집 (1.7.02:45)
- 교대근무조 편성운영(1.7부터) : 1일 197명
 - 사고현장, 병원, 수용소

2.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운영 (1.7부터)

- 도 : 종합상황실 설치
- 청주시 : 사고대책본부 설치 (본부장 : 시장)
- 현 장 : 군·관·경 합동지휘소 설치

3. 도지사특별지시 시달 (1.8)

- 사고현장 완벽한 수색 및 복구
- 부상자 치료, 사망자장례 철저
- 이재민 주거 및 생계안정대책 추진
- 범도민 이재민돕기운동 전개 등

4. 유관기관협의회 개최

- 도·시단위 개최 : 8회 (도 2회, 시 6회)
- 협의사항
 - 범도민 이재민돕기운동 전개
 - 각 기관별 이재민 지원방안 강구

5. 성금관리위원회 개최 (1.13)

- 구 성 : 16명 (위원장 : 지현정)
 - 시의원2, 언론인6, 학계1, 법조인1, 행정기관2, 기타4
- 협의내용
 - 이재민 전세자금 지급 : 가구당 1천만원
 - 입주상인 생업자금 및 생계비지원 : 점포당 3백만원

罹災民돕기運動展開

〈 接受 狀況 (1.13현재) 〉

○ 성 금	2,483건	2,147백만원
○ 성 품	의류 등	13,996점

○ 지역별

- 도 내	:	2,435건	1,376백만원
- 도 외	:	48건	771백만원
- 해 외	:	1건	300\$

○ 접수 창구별

- 행정기관(도·시)	:	1,046건	1,557백만원
- 언론사(TV, 신문 8개사)	:	1,437건	595백만원

○ 이재민돕기 분위기조성

- 담화문 발표 : 1회
- TV, 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: 광고, 자막방송 등 88회
- 가두모금활동 : 11개소 90명
-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: 134개소
- 임시반상회 개최 (1.9.20:00)
 - 4,535반 112,960명 참여
 - 성금모금 : 302백만원 (참여 17,776명)

< 汎道民 自願奉仕活動 展開 >

○ 여성단체 봉사활동

- 사고현장 정리인력에 대한 간식제공

- 수용시설 위문 및 간식제공

- 청주시 부녀의용소방대 : 50명
- 적십자 부녀봉사회 : 50명
- 여성단체협의회 : 20명
- 도및 청주시협찬회 : 184명
- 청주시부녀회 : 93명
- 청주시 새마을부녀회 : 50명
- 110연대 가족부인회 : 19명
- 청북교회 여신도회 : 20명

○ 사고현장 장비지원

- 민간소유장비 무상지원 : 36대
- 군보유 장비지원 : 35대

○ 의용소방대원 지원활동 : 250명

- 진화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
- 출입자 통제등 현장정리 지원

事故再發防止對策

1. 가스·위험물 일제점검 실시

- 대상 : 가스, 유류사용 및 저장시설
- 기간 : '93.1.8 - '93.1.14 (7일간)
- 중점점검 사항
 - 취급용기 보관상태
 - 시설·설비의 설치 및 관리상태
- 점검결과 조치 : 시정보완 및 의법조치

2. 복합건축물 종합안전진단 실시

- 대상 : 대형건축물 및 준공후 10년이상 복합건물
- 기간 : '93. 1. 12 ~ 2. 23 (42일간)
- 편성 : 소방, 건축, 전기, 가스합동(건축사등 전문가 참여)
- 중점점검 사항
 -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(도괴 위험성) 여부와 위법내용
 - 전기, 가스, 난방설비 위험성 여부
- 진단결과 조치
 - 건축물안전심의회 구성 종합판정 : 안전성, 위법성
 -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및 의법조치

參 考 事 項

이재민구호 지원

○ 지원 기준

○ 지원 실적

○ 향후지원 계획

이재민 구호비 지원

○ 지원기준

('92 . 7. 21 부터 적용)

구 분	재 인	년 위	지 원 액
○ 사망자 및 설종자 위로금 (장의비 포함)	의인금 100 %	구당	400 만원
○ 응급생계구호 (최초 7일간)	국 고 70 % 지방비 30 %	1인1일	백 미 : 432 g 부식미 : 800 원 개 1,333.08 원
○ 장기 생계구호	국 고 70 % 의인금 30 %	1인1일	백 미 : 288 g 정 백 : 138 g 부식미 : 800 원 개 1,259.85 원
○ 생계 보조비 (가구의 주수업인이 있던 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고 유가족)	국 고 50 % 의인금 50 %	세대	200 - 300 만원 .1급 : 300 만원 (기택보호세대) .2급 : 250 만원 (자활보호세대) .3급 : 200 만원 (의료부조세대)
○ 새입자 보조비	국 고 50 % 의인금 50 %	세대	200 만원 범위내 실계약금
○ 주택 복구비	국 고 6 % 지방비 6 % 의인금 8 % 응 자 70 % 자부담 10 %	동당	320 - 960 천원 (의인금 8 % 해당분)

○ 지원실적

- 근거 :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관리운영 규정 (보사부 훈령 제628호)

< 법정 지원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원기준액	지원인원	지 원 액	비 고
· 사망자 위로금	4,000	28 구	112,000	중앙의연금
· 생계보조비	3,000	5 세대	15,000	국고및중앙의연금
· 응급생계구호(7일)	9	252 명	2,331	중앙의연금
· 장기 " (60일)	73	252 "	18,443	중앙의연금
· 새입자 보조비	2,000	26 세대	52,000	국고및중앙의연금

※ 사망자위로금, 생계보조비, 응급생계구호비 — 도 보유 의연금에서 우선지급

< 특별 지원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지원기준액	지원인원	지 원 액	비 고
· 보사부장관 월동대책비	300	63 세대	18,900	중앙의연금
· 도지사 위로금				
- 사망자	300	28 구	8,400	도 의연금
- 부상자	200	39 명	7,800	
- 이재민	300	63 세대	18,900	
· 시장 위로금				
- 사망자	300	28 구	8,400	시 의연금
- 이재민	300	63 세대	18,900	
· 시장특별생계비	1,000	63 세대	63,000	시 예비비
· 학자금 면제		중 14 명 고 30 명	25,289	교육청

向後支援 計劃

지 원 구 분	지 원 내 용	지 원 기 준	지원금액	근 거
○ 생업자금대여	· 대여희망세대	· 세대당 5백만원한도		· 제해구호법시행령
○ 취업알선	· 취업희망자	· 취업희망자 취업알선		· 취업상담창구설치 운영지침(노동부 예규202호)
○ 주택복구	· 59세대 (戶)	· 세대당 10,800천원 (국비, 지방비, 의연 금, 융자금)	637,200	
○ 상가복구	· 융자신청사 시설비 지원	· 건축비의 70%까지 융자		· 도소매업진흥법 제42조
○ 소년소녀가장 세대조사책정 보호	· 대상 : 3명 (미취학1, 국교1, 사원1)	· 학용품비(년) 1명 · 피복비(년) 49,790×3명 · 영양급식비 250원×240일×3명	14 149 180	· 아동복지사업지침